

이는 국제인권법과 상충함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특히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이 법안은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바꾸겠다던 참여정부 스스로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일이다.

국가인권위마저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현행 법과 제도로도 테러방지대책이 가능한데, 대테러활동을 모호하게 정의,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는데다 출동한 군병력의 활동범위에 제한을 두지않아 국정원의 권한강화는 물론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또한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성명에서 “테러방지법안이 한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인권침해의 소지를 확대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테러활동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재난대책기구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국정원이 자체 정보업무를 넘어 관계기관 대테러 활동까지 총괄 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그리고 법률의 적용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어장치가 없는 이 안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라크 침략전쟁에의 동참이 결국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의 강력한 배경이 되었다. 침략국과 그 군대는 이라크 민중을 적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결국 자국의 민중을 향해서도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이라크 민중을 위한 것일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우리 당은 민중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전 사회의 보수 우경화를 촉진하는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며, 이라크 침략전쟁 동참과 그에 따른 테러 위협을 근거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

국정원과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2003년 11월 6일

사회당

##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국정원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추진을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안은 911 사태 이후 국민의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이용하면서 2002년 월드컵의 원활한 개최라는 명분을 내세워 2001년 11월 처음 국가정보원에 의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인권침해소지가 많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지나친 권력 강화 등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내용 때문에 시민사회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2002년 5월을 기점으로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올 8월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로 2차 테러방지법안 제안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고, 국회는 ‘파병으로 인한 테러 대상국 포함 또는 북한의 상시적 테러위험에 대한 대처 필요 등을 이유로’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수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법원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를 근거로 출입국을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 의견서를 통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법무부와 국방부 등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이 법질서를 위배하고 민주주의적 체제를 혼란스럽게 할만한 근거들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반대 또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 2001년 테러방지법이 제안됐을 당시에, 테러방지법이 초국가적인 인권탄압법이며, 테러를 방지할 법은 현행법률로 충분하므로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음을 밝혔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지나친 권한 강화가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했었다.

우리의 판단은 이른바 2차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2001년 원안에 비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개선되지도 않은 법안을 관련부처와 조율도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성급히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 더욱 분노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국정원의 폭압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주눅든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의 양심, 사상의 자유를 여전히 억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국정원의 답이 국정원의 초국가적인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이란 말인가!

우리는 정보기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할 수 있도록 졸속 입법된 테러방지법 제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11.7

문화일보(11.07.금)

## <포럼>국정원 대테러센터 필요없다

지금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01년에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번에는 월드컵의 안전 개최를 내세우더니 월드컵이 무사히 끝나자 이번에는 이슬람테러 위험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기보다는 국정원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청과 정치사찰 논란이 일자 여야 대선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정원 개혁과 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장의 임명에 반발하면서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혁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보기관은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조직과 활동 내용이 비밀로 되어 있다.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통제가 매우 어렵다.

업무의 속성상 조직과 활동의 비밀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정보 수집 업무와 방첩 업무에 국한돼야 한다.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집행과 사법행정 권한의 행사는 다른 기관이 맡아야 한다. 정보기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막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다.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지른 단순한 범죄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테러 행위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넓게 해석하면 대테러센터, 즉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그만큼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커진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정보 수집에 관한 법이 아니다. 한 마디로 국정원 산하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권한 및 활동을 규정한 법이다. 법에 따르면 대테러센터는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지도·조정한다. 테러 진압을 위해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하거나 금융 정보를 제공받고 테러 관련 허위신고죄에 대한 수사권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테러 정보의 수집이나 외국의 정보기관과 정보 협력을 할 수 있다. 테러에 대한 대응과 사후 수습 조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나 재난관리기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정보 수집 업무를 넘어 대테러 활동을 지도하고 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중복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테러를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테러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그 동안 테러 대응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는 법무부, 테러 진압은 경찰, 테러 물품의 반입 방지는 관세청, 항공기 테러 방지 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담당해 왔다. 국정원이 수집한 테러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 기관과 협력하여 테러 방지 활동을 하면 된다. 대테러센터가 이들 기관을 '지도' 할 필요는 없다.

외국의 테러 대응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에서 강화된 정보기관의 반테러 활동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형사절차상 인권 침해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국가의 대테러 대책이 국제인권법과 난민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우리의 테러 대응체계가 적절한지,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가 정당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마냥 추종할 일은 아니다.

국정원은 예전과는 달리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의 국정원을 평가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인권 침해를 일삼던 과거와 달라져야 하고, 또 달라졌을 것으로 믿고 싶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국정원을 믿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테러를 예방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통해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넘어 대테러 활동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국정원은 불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테러 정보 수집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테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다면 테러의 방지는 어렵지 않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개혁에 역행하는 법으로 제정돼서는 안 된다. 장주영 / 변호사

## 인간을 재단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중단하라

이미 인권침해 소지를 수 차례 지적 받은 바 있는 테러방지법이 이라크 파병 국면을 이유로 형식상의 수정만을 거친 채 재상정 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실로 테러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당장 이라크 파병 계획을 중단하고 인간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는 전쟁을 반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에서 제출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국가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평상시에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원안보다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넓히고 국정원장의 독점적 권력을 강화했다는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만약의 전쟁'을 대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쟁을 막기는커녕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일조하고 있듯 '만약의 테러'를 대비한 테러방지법 또한 특정 사상과 특정 집단을 억압하는 기제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국가시설 등을 위협'할 집단은 기존 체제를 거부하고 변화를 외치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노동자 등의 소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미 자국 안에서, 일상 속에서 테러와 같은 위협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테러'를 굳이 '방지'하겠다는 것은 현재 다양한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며 그들을 억압하는 사슬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방지'는 배타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안으로는 가장된 안정을 강요하게 된다.

우리는 현재 '테러방지법에 의한 인권 테러의 위협'에 처해있다.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조장된 가상적 공포가 이후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의 정해진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 법의 자의적 해석에서 자유롭지 못한 소수자들은 위험분자 혹은 열등한 인간으로 분류되어 오히려 더한 긴장과 공포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누구도 인간을 재단할 수는 없으며 어떤 법 또한 인간을 분류할 수는 없다.

누구에 의한 '테러'인가, 누구를 위한 '방지'인가. 누가 분류하고, 누가 분류 당하는가. '자의적'인 '법'이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테러를 막겠다며 다른 폭력을 묵인하고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중단하라. 모든 폭력에 대한 반대, 일상에 만연된 폭력을 거부 할 때에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2003년 11월 6일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 즉각 중단하라 !

국정원은 작년 월드컵 개최 전에, 테러에 대처해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정부내에서도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

아 법 제정이 무산되었다. 그런데, 없어진줄 알았던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가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일부 국회의원이 또 다시 법 제정 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슬람테러가 확산될 위험이 있고 한국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테러방지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파병결정을 함으로써 아랍인 전체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제 그 잘못 결정에 의해 테러위협이 높아질 것이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테러의 원인제공을 해놓고 테러방지를 하겠다는' 앞뒤가 바뀐 논리인 것이다.

테러방지를 하겠다면 국정원과 국회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파병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개혁에도 한참 어긋나는 반개혁적 탄핵이다. 국정원이 해외정보만을 수집하는 해외정보처로 바뀌어야 한다는 공약을 실천해야 할 정부가 아직 아무런 개혁조치도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고 국내 활동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5·6공 시절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내용은 테러방지를 위해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대테러센터'는 테러정보의 수집 외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하고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국정원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운영하고 특수부대나 군병력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결국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인권침해와 간첩조작으로 악명 높았던 국정원에 어떻게 이런 권한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국정원이 국내 문제 개입을 합법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정원이 우리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음모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행동도 테러로 덧씌워 사찰, 감시, 통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거나 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한다. 지난 11월 3일 국회에서 공청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법무부조차 테러방지법이 현행 법체계와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마디로 정부 내에서 조차 협의가 안된 것을 국정원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과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화된 시대에 더 이상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 통제가 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국정원은 엉뚱한데 신경쓰지 말고 과거 잘못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철저한 자기개혁으로 거듭나는 것이 급선무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그 장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막아내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민주시민 사회단체와 양심적 인사들과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03년 11월 6일  
전국민중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녹색평화당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

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태일기념사업회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광주전남민중연대 / 부산민중연대(준) / 경기민중연대(준) / 강원민중연대 / 경남민중연대 / 대구경북민중연대 / 충북민중연대(준) / 서울민중연대(준)

##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 당장 중단하라 – 이슬람의 테러위협 운운하지 말고 과병결정 즉각 철회해야

2002년, 국정원은 월드컵 개최와 함께 테러에 대처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나섰으나 인권, 사회 단체들의 격렬한 저항과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반인권,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는 등 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월드컵은 테러방지법 없이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과 국회는 또 다시 인권 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법적 절차 가운데 하나인 공청회를 강행하는 등 올해 안에 법을 제정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정원은 법안제안 이유로 이슬람테러의 확산위험을 들고 있다. 이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결정해 15억 아랍인을 적으로 돌리고 테러를 선포한 바 있다. 이라크 전쟁은 군사패권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침략전쟁임이 밝혀졌음에도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결정은 곧 이라크와 이슬람세계에서의 반한 감정이 높아질 것은 예상된 일이다. 이미 이라크 현지에서는 다국적군에 대해서도 공격을 불사하겠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바그다드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과 한국 기업인이 이라크인들에게 납치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테러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테러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는 논리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한국인에 대한 테러의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노무현정부는 당장이라도 과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 국정원의 국내사찰업무일체를 중지시키고, 해외정보만을 다루는 해외정보처로의 전환을 공약했으나 집권 8개월이 지나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만약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용인한다면 국정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통령 스스로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의 내용 중 핵심은 테러방지를 위해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대테러센터'는 테러정보의 수집 외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하고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국정원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운영하고 특수부대나 군병력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결국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인권침해와 간첩조작으로 악명 높았던 국정원, 최근 정치자금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도마위에 오른 소위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동원하는 등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서 어디다 쓰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정원이 저지른 과거 범죄를 묻지도 않고 면죄부를 주는 일이며, 나아가 국정원이 국내 문제 입을 합법화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가정보기관이 우리 사회를 통제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사회로 되돌리려는 음모에 동조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회와 국정원 등 일부 수구보수 집단들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정원 강화는 우려를 넘어 더 이상의 구시대의 악행이 저질러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대테러센터 등의 설립은 항상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수사하려는 발상이며, 결국 국정원의 강화와 정보기관과 내통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정보기관의 국민통제라는 민주주의적인 기본 개념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으로 이해하며 민주노총은 현재 국정원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추진을 주시하며,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

2003년 11월 6일



### <보도자료>

2003년 11월 6일(목)

## 민주노동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4층)
- 전화 : 02)7611-333 전송 : 02)7614-115
- 대변인 : 이상현 (761-1333, 011-723-2013)
- 부대변인 : 김배곤 (761-1333, 011-9472-9920)

### <논평>

##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재추진을 중단하라

국정원이 국민적인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테러방지법 연내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일부 독소조항이 손질됐다고는 하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수사관할권 확장, 관계부처 통합·지휘권 부여 등을 통한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력 강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회대의 악법이다. 또한 대테러활동에 동원하는 문제,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 감청 및 통신 제한사유의 확대 등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체계를 파괴하는 위험요소마저 안고 있는 반인권법으로 절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파병으로 인한 테러 대상국 포함을 우려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병을 만들어놓고 약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그 어떤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고, 파병 결정이 되지도 않은 마당에, 파병을 전제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겠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궤변일 뿐이며, 그 명분도 없는 억지주장인 것이다.

우리는 국민 여론을 중시하겠다던 청와대는 독단적, 기습적으로 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명분으로 국정원은 일방적인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의 이중적인 처사,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통렬히 규탄한다.

거듭 주장하지만,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은 국민의 인권을 불모로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자충수로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을 비롯한 광범위한 국민들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끝>

### 대변인 이 상 현

[논평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

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대테러활동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정원 산하에 두게 돼 있는 대테러센터가 대테러활동을 기획·지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군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 체계 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정원법에 의해 설치된 국정원에 독립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테러센터의 장이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대해선 '사실확인'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이원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을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테러센터장의 군 특수부대 출동요청으로 인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 통수권 체제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된다', '군 병력이 불심검문 등 일반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로써 인권시민사회단체들뿐 아니라 유관 정부부처까지도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거나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테러방지법안은, 비밀정보기관의 권력 강화로 인해 기본적 인권이 제약됨은 물론 국가의 민주적 체제 자체가 뒤흔들리는 숨막히는 미래를 불러올 것이다. 유독 정부부처들 중 국정원만이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에 집착하는 현재의 상황은 테러방지법안이 곧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시 한번 국정원에 고한다. 테러방지법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공청회장에서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날치기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지, 국정원을 대변하는 기관인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임을 밝혀둔다. <끝>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한겨레:왜냐면, 2003. 11. 1]

### 테러방지법은 인권에 대한 테러

2001년 11월 처음 국가정보원에 의해 제안된 테러방지법안은 9·11 테러 직후 국민 사이에 만연한,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이용하는 한편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대비라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사천리로 통과될 듯이 보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저항이 워낙 커기 때문에 2002년 5월을 기점으로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올 8월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로 제안된 제2차 테러방지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른바 제2차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제1차 법안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외 시민인권운동단체의 제정반대 의견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nopota.jinbo.net](http://nopota.jinbo.net)). 이에 더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한국의 테러방지법이 난민 및 외국인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 기구의 우려는 "어떠한 테러대책도 인권과 난민의 지위, 인도주의적 국제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2002년 유엔 총회의 결의(A/RES/57/219)를 일깨워준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 1373호를 이용하여 공안,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에는 중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테러라고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 반테러조치만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주 끌어들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73호는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 정부가 추진하였거나 하고 있는 '반인권적, 자유침해적 반테러 조치'에 대한 백지 위임장이 결코 아니다. 이 결의는 9·11 테러 직후 발표된 것이기는 하나,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 노력의 연장선에 서 있고, 반테러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테러자금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이 결의는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유엔 회원국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는 정부 쪽 논리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유엔 회원국인 대한민국도 안보리 결의 1373호에 '구속되므로' 현재의 초안대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는 결의 1373호가 여러 군데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 '국제법 및 국내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반테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빠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이란 국제법과 국내법(헌법을 포함)에 합치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그리고 난민의 지위가 점차 침해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테러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란 결국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현행 법안의 내용은 어떤가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국정원으로 하여금 대테러 업무에서의 기획, 지도 및 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나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극히 모호하다)에는 평상시에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물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각국 비밀정보수사기관 사이의 정보교류를(말이 정보교류이지 자국민의 사적 정보를 타국에 넘겨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승인하는 것은 물론,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도 감청(도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테러행위와 무관한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진짜 테러 때문에 감청(도청)을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남아시아, 이슬람권 출신자들은 앞으로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기구를 버젓이 상급 ‘정보수사기관’으로 만들고, 계엄상황이 아닌데도 군대가 출동할 수 있게 하며,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을 ‘테러를 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아예 입국도 못하게 하는 법을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반테러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국정원 개혁의 방향이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의 분리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허위신고자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에 새로 부여하는 법을 새삼 만드는 일이 온당한 처사인지 묻고 싶다. 혹자는 법안 제13조가 제1차 법안에서와 달리 “허위임을 알면서도” 테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는 자만을 처벌하고, 그러한 자를 적발하는 수사권만을 대테러센터가 갖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는 모르고 하는 소리다. 모든 나라에서 반테러법은 처벌이 아니라, 처벌을 빌미로 한 합법적 감시권한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만건을 조사하면 1건 정도가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것이 테러범죄의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가. 그러나 테러리스트를 이길 힘은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방식은 이미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 사실도 무시하는 테러방지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약속한 국가정보원 개혁부터 발벗고 나서라.

이계수/울산대 법학부 교수

<성명>

## 국정원과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당장 멈춰라!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는 오는 11월 3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 가운데 하루인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최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공청회 개최 일정은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변경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하여 이미 입법을 기정 사실화하고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치르려는 술책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새사회연대는 국회의 일부 수구보수 집단들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

다. 국회가 우리 사회에 테러에 대한 현재적 위협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몰상식한 처사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권력특권계층의 주관적인 엘리트주의적 발상이자 파시즘적인 행태라고 단정한다.

새사회연대는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정보기관과 내통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정보기관의 국민통제라는 민주주의적인 기본 개념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또 설사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은 어떠한 당론도 정하지 않고 논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본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유일한 이유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 뿐이다. 항간에 떠돌고 있는 수정된(?)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평시에 군을 동원하겠다고 하고 경찰특공대와 군을 국정원이 지휘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항상적으로 대테러센터를 통해서 국민을 감시하고 수사하려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다. 국정원이 수사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핵심이다. 국가보안법과 똑같이 수많은 인사들에게 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 뻔한 테러방지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폐해에도 불구하고 폐지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바로 국정원의 역사적인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일이며 국정원의 국내 문제 개입을 합법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우리 사회를 국가정보기관이 통제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사회로 되돌리려는 음모에 동조하는 것이다.

새사회연대는 국정원과 일부 이에 경도된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옥죄고 정보와 수사 그리고 진압부대에 군까지 통제하여 사실상 우리 사회를 국정원의 장악하에 두려는 음모라고 보며,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해 왔다. 국회와 국정원이 당장 테러방지법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새사회연대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국민적인 참여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3년 10월 31일

새사회연대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짜 : 2003년 11월 14일(금)

배수 : 총2쪽

문의 : 새사회연대 (02-925-0062, 담당: 이창수 017-717-0062, nsociety@naver.com)

<성명>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이른바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했다. 김덕규 의원, 함승희 의원,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11월 10일)이 제출된 지 3일만에 이루어진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명분만 테러방지법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회는 즉각 입법 제정 음모를 집어쳐야 한다고 본다.

우리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법 처리에 앞장서거나 방조한 일부 의원들의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민주적인 행태는 역사적 반역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낙선운동 등 국민적인 심판을 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항공안전 및보안에관한법률(2002.8),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2003.4)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처벌법(2004.4) 등을 통해서 테러를 막기위한 입법적인 조치가 끝나 있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에 불과하다.

국정원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자기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월드컵을 핑계 삼아 물타기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부 의원들과 야합하고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 그들의 권한 확대 장치를 만들려고 시도해 왔다.

또 각 당은 국가보안법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사라지지 않는 기관을 공개적인 논의조차 해 본 적이 없고 당론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3인의 의원들을 내세워 졸속으로 처리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테러방지법'은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것인 밀실야합의 극치를 이루는 법이다.

또한 설사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기본이다. 대테러센터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면서 특별

법으로 제정하는 것 자체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음모가 있는 것이다.

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국정원의 국민통제가 가능한 정당한 요구 투쟁을 트집잡아 활동가 9명을 연행한 행위를 납득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사실상 '국정원산하대테러센터설치법'인 이른바 '테러방지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제2의 민주화 투쟁 시기에 걸맞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통과는 원천 무효이다. 즉각 철회하라!
- 국정원은 자기 권한 강화 음모 즉각 중지하라!
-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2003년 11월 14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회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짜 : 2003년 11월 17일(월)

매수 : 총2쪽

##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당론 결정에 분노한다! 즉각 테러방지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

열린우리당은 지난 11월 14일 제9차 정책의총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국제정보와 예방능력을 감안해 국정원에 센터 역할을 부여하는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의 결정과정을 보면서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몇 가지 인권침해 요소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3당이 합의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을 반대해 온 핵심은 바로 입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주체가 국정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와 감시없이 무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 설치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단지 효율성을 근거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너무도 쉽게 동조하고 나섰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인 테러방지법을 그토록 신속히 당론으로 정한 이유를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창당한 지 일주일이 채 안된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에 대해 단 한번도 공식 논의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당일 긴급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바로 찬성 당론을 정했다. 이것이 바로 열린우리당의 '생산적인 정치'인가?

또한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수 차례 시민사회와 접촉해 온 김덕규 의원은 국정원 권한 강화와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우려를 공감하고 신중한 입법을 약속해 왔으나 핵심적인 지적은 수정안에 반영하지도 않고 수정안 제출 5일만에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이것이 바로 열린우리당의 '참여 정치'란 말인가?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기반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그리고 대테러센터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각종 정보 업무를 총괄하고 특수부대의 출동 요청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부분도 여전하다.

테러방지법은 법률로서 아예 대테러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차제에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음지의 권리기관' 국가정보원이 일반 행정부처의 업무에 개입하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 역시 불 보듯 한 일이다.

또한 이번 수정안은 수정 이유에서 아예 북한과 이슬람을 '국내외 테러 위협'으로 명기하는 무모

함을 드러냈다. 이는 이 법안의 추진 세력들이 낡은 냉전적 사고와 인종주의적 인식에 사로 잡혀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발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열린우리당이 진실로 국민의 신뢰 속에서 대의정치를 펴고자 한다면 지난 14일 정책의총 결정에 대해 공개 해명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모든 의원의 총의를 모아 분명히 반대 당론을 정해야 한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해서도 입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먼저 근본적인 테러 원인과 예방대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 4.19 민주이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정통 민주개혁세력'임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에 엄중히 항의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을 주도하고 방조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총선에서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라.

2003년 11월 17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동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016-286-3340), 참여연대 양영미(02-723-4250), 민가협 박성희(02-763-2606), 새사회연대 이창수(017-717-0062), 민변 김기연(02-522-7284)

### "테러방지법안 입법에 반대한다"

#### -법안의 문제점 요약문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동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 테러방지법안(11. 14 국회 정보위 통과)의 문제점

### 법안 수정 이유

2003년 11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은 ①2001년 11월 28일 정부원안이 제출된 이후 각종 테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법이 입법되는 등 입법환경이 변화했으므로 원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 상 특례조항을 삭제했다며 ②“북한·이슬람 등의 국내외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 테러예방활동에 필요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각종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테러분자 등 테러의 주체에 대한 규제 등 국가 대테러업무에 관해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대테러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수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 법안의 핵심 내용

법안은 먼저 “테러”, “테러단체”, “테러자금”, “대테러활동”的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한 다음 대테러활동에 대한 기획·조정·권한을 부여하고 대테러활동의 일환으로 대테러센터의 장이 되는 국정원장에게 외국인의 출입국 규제 요청권,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군병력이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설의 보호 및 경비를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 ○ 본질적 문제점 : 대테러조직 - 국정원의 기능 및 권한 강화

1. 법안은 효과적인 대테러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해 국가조직체계와 기능을 재편성하고 있다. ①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제3조) ② 국가정보원장 소속 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③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해 특수부대와 군 병력 등이 계엄을 통하여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지만, 대테러활동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갖는 대테러센터의 관할자인 국가정보원장이 그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요약하자면,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합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합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국가정보원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인 기능을 맡게 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 국정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넘어 ‘대테러활동’이란 명분으로 직접 다른 국가기관들의 기능에 대해 기획·조정을 하는 것(제4조 1항 제3호)은 정보기관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정보기관과 행정기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위에 사실상 군림하게 될 위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3. 대테러센터가 기획·조정하게 되는 ‘대테러활동’은 “테러혐의자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법안 제2조 4항)으로서, 사실상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4. 대테러대책의 핵심이 되는 대테러센터가 그 자체로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제4조3항)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 훈련 등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5조5항) 이는 공개행정의 원리에 어긋난다.

5.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총괄하지 않으면 해외와의 정보교류 협력이 어렵다’, ‘해외와의 정보 교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하는 것이지 보안업무를 한다 해도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정부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의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국정원이 테러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도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와의 정보교류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원칙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합부로 총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비밀정보기관 간의 정보교류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교류가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와 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6. 국정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행정각부에 해

당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정보기관은 비밀주의를 그 속성으로 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정보력에 기반해 권한 확장을 피하기 마련이다. 정보기관의 권한의 확대는 국가의 민주적 운영에 항상 위협을 주는 요소이다.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 군 병력의 동원

7. 대테러센터의 장(국정원장)은 군의 특수부대를 요청(제11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民間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며, 국정원이 국가의 물리적 집행력까지 개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8. 또한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된 군병력 등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다.(제12조) 이는 위 5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계엄 없는 계엄상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헌법은 군과 경찰의 기능을 분리한 다음,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해서만 계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헌법적 차원의 논의 없이 한 국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계기 또한 그 속에 품고 있다. 가령 이런 사례를 생각해보자. 대책회의 의장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하였지만, 동원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른다.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청와대나 무역센터, 야구장 등을 군 병력이 경비하는 상황이 가능할 수 있다.

## ○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

9. 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안의 수정이유에서 '북한'을 국내외 테러위협으로 명기하고 있다. 북한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사회에 항상 존재하는 테러의 위협요인으로 상정되면서, 이를 통해 대테러기구의 권한과 기능범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즉, 별도의 테러징후가 포착되지 않더라도 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에는 영원한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국가정보원의 대테러권한은 언제나 가동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을 테러위협 세력으로 지목함으로써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

10. 국제적으로 아직 '테러'에 관한 개념이 합의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안은 9개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테러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이를 바탕으로 대테러대책을 강구한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여전히 '테러' 개념의 모호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대테러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성이 크고 동시에 대테러센터의 활동 범위도 무한 확대하게 된다.

11. '테러단체'를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2항),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문구는 여전히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성이 높다.

## ○ 외국인에 대한 감시·차별 강화

12.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제8조 1항, 2항) 현재도 국정원이 국정원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사찰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실확인'의 범위가 불분명해 사실상 수사권한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출입국 규제 조치의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인 권리행사와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수정 이유에서 '이슬람'을 테러위협 세력으로 명기하고 있어, 특정국 출신의 외국인을 범죄집단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차별을 양산할 소지도 높다.

## ○ 국가정보원의 감청권한 강화

13. 테러방지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 2호(국가안보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를 개정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를 포함시키고 있다. (법안 부칙 제2조 제3항) 테러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감청의 가능성은 매우 높고, 국정원의 감청권한도 확대된다.

### ○ 테러 대응을 위한 기존 법제, 기구와의 중복 및 예산의 낭비

14.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통해 굳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국민적 감시의 틀 밖에서 그 범위가 광범한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다.

### ○ 결론

15. 테러방지법은 '테러'라는 모호한 개념에 근거해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의 경계를 넘어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선 안 된다.

지금은 도리어 국정원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국정원이 직접 국민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며 일반 행정기관에 대해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제거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후에 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한다. 정보 수집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국민의 프라이버시·信條·정치적 행동, 국내정치정세에 대한 정보수집은 엄격히 금지하며, 통신체한조치(감청 등) 또한 보다 철저한 감독 하에(의회와 법원의 개입 등)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 간 정보교류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장치 역시 마련해야 한다.

##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수신 : 국회의원님 귀하

발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총 98개 단체, 소속단체 명단은 2쪽)

날짜 : 2003년 11월 18일

매수 : 총 7 쪽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요약문 5쪽 포함)

문의 :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031-213-21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전국민중연대 정영섭 (018-402-2853) 새사회연대 오영경 (02-925-0062)

인권실천시민연대 이효진 (02-3672-9443)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참여연대 양영미(02-723-4250)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 <질의서>

###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찬반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테러방지법안이 지난 11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의 비밀주의적 성격 상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널리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만, 법안의 내용을 보면 '테러방지'라는 명분 하에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시키는 법으로서 사실상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법', 즉 '국정원 강화법'이 올바른 명칭일 것입니다.

3. 법안은 국정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넘어 '대테러활동'이란 명분으로 직접 다른 국가기관들의 기능에 대해 기획·조정(제4조 1항 제3호)을 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기관과 행정기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위에 사실상 군림하게 될 위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테러센터의 장이 군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고, 군 병력이 계엄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민간 치안 유지에 동원되는 등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테러' 개념의 모호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대테러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성이 크고 동시에 국정원이 관할하는 대테러센터의 활동 범위도 무한 확대하게 됩니다.

4.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기존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5. 이러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귀 의원님의 찬반 의견을 19일 수요일 낮 5시까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회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짜 : 2003년 11월 18일 목요일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출입기자

발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98개 단체, 참가단체는 아래 참조)

제목 : 11월 19일 10:0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 보도요청서

매수 : 총 7 쪽

문의 : 참여연대 양영미 02-723-4250

민변 김기연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별첨 :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요약문(총 5쪽)

### <기자회견>

날짜 : 2003년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10시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순서 :

- ① 입법반대 취지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병모 회장)
- ② 입법반대 국회의원 의견 발표 : 천정배(열린우리당) 의원 등
- ③ 각계 의견 발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국 소장
  - 여성단체연합 정현백 공동대표
  - 헌법학자 성명 발표 : 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
- ④ 기자회견문 낭독(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 ⑤ 질의 및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테러방지법안이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

로 상정돼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실제 '테러방지'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비밀주의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돼,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국정원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는 모두 없앴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법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 별첨했습니다.

3.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임종석 의원(열린우리당) 등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4.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각계의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특별히 천정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셔서 꼭 취재·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됩니다. <끝>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장애인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협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

○ 날짜 : 2003년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10시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순서 :

1. 입법반대 취지발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병모 회장

2. 입법반대 국회의원 의견 발표 : 천정배(열린우리당) 의원, 정병국(우소속)

유세민(열린우리당)

김홍신(한나라당)

반대 의견

등장

3. 각계 의견 발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국 소장

- 헌법학자 견해 발표 : 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

4.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성명 낭독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박상환 공동의장

5. 질의 및 답변

○ 그 외 참석자 : 사회진보연대 김세균 대표, 여성단체연합 정현백 대표, 유가협 박정기 아버님

○ 자료 목차

1. 경과 (1~2쪽)

2. <성명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3~4쪽)

3.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헌법학 교수들의 견해 (5~6쪽)

4. 정보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의견 (7~8쪽)

5. 테러방지법안(11. 14 국회 정보위 통과)의 문제점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9~13쪽)

## 경 과

### 2001년

- 11월 12일 :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
- 11월 20일 :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철회 요구, 제 인권·사회 단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 이후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운동 전개
- 11월 29일 : 국회 정보위에 테러방지법안 회부
- 12월 7일 :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제1차 청문회' 개최

### 2002년

- 2월 20일 :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송부  
⇒ 이후 국회 정보위 심의 무산
- 5월 31일 : 월드컵 개막.

### 2003년

- 8월 18일 : 국회정보위 김덕규 위원장, 테러방지법안을 새로 수정해, 연내 입법처리 입장 밝혀
- 9월 초 ~ 국정원, 일부 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설명 작업
- 9월 22일 :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를 위해 함께 했던 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 행동' 다시 구성하고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 막기로 결의.
- 9월 30일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주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 10월 20일 : 김덕규 정보위원회 위원장 면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전달
- 10월 22일 :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 정형근 의원 면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전달
- 10월 24일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한국 사무소, 테러방지법안 8조 외국인 출입국 규제에 관한 우려 국회 전달
- 10월 28일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에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의견 전달
- 11월 3일 :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 공청회 개최
- 11월 6일 : '공동행동', 국회 앞 집회 개최
- 11월 10일 :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함승희,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 테러방지법 수정안 공동 발의
- 11월 13일 : '공동행동', "테러방지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국회 앞 집회 개최
- 11월 14일 :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 국회본청 앞 테러방지법 심의 중단 촉구 시위 중 연행
- 11월 14일 : 국회정보위원회, 만장일치로 테러방지법 수정안 통과
- 11월 17일 : '공동행동', 열린우리당 규탄 성명 발표
- 11월 18일 : 열린우리당 김근태, 천정배 의원 면담
- 11월 19일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안의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1. 국가정보원의 권력을 확대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법, 테러방지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막강 권력 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 이후 일관되게 그 입법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4일 끝내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앞으로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정원 개혁 논의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절박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

2. 분명히 말하건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반민주 악법이다. 이 법은 국정원장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법, 국정원 강화법이라 불리는 것이 옳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일반 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군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 서너 차례의 법안 수정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올바로 직시하자. 국정원은 비밀주의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으로 민주적인 통제가 매우 어려운 조직이다. 이러한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구실로 다른 행정기관들에 간섭하고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일대 퇴보를 예정하는 법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정보기관의 권력 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과거가 무섭도록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3. 국정원이 관할하게 되는 대테러활동은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뛰어넘어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그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테러'와 '테러단체' 역시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그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에 기대, 대테러센터가 출입국 요청권이나 감청권한, 군의 특수부대 요청권 등을 휘두르게 된다. 내·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감시·사찰의 강화, 통신 자유의 침해 등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암울한 미래를 진정 우리는 맞이하려 하는가?

4.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예방과 진압,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군이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고집한다면, 그 뒤에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무산시키고 오히려 국정원의 권력을 확대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적 인사가 국정원장인 마당에 무슨 걱정이냐고들 말한다. 이는 정보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이른바 민주인사가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이용

되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여야 한다. 한 번 잘못 만들어진 법은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우리는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5.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12인의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남은 국회 절차들을. 국정원의 권력 확대 음모에 장단 맞추며 국정원강화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인권·반민주 의원이란 비난을 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자 한다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라. 대선 당시, 너나 할 것 없이 외쳐대던 국정원 개혁의 깃발은 어디 갔는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아울 식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인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작업에 나서라.

2003. 11. 19.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장애인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홍사단/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준)-(소속단체)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사회당,사회진보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보건복지민중연대(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의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총98개단체)(가나다순연명)

##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헌법학 교수들의 견해

2001년 하반기 국가정보원은 9.11사건 후 전 세계적인 테러방지입법 강화 흐름에 편승하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등을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테러방지 법안은 두 차례에 걸친 수정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입법화되지 못했다. 그런데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국가정보원은 동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급기야 지난 10월 수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다시금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국회 공청회를 거친 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의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11월 14일 전격적으로 정보위를 통과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눈앞에 둔 상태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정되어 재차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되었지만 내용상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입법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헌법학 교수들은 테러방지법안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며 따라서 입법권의 한계를 추월하는 법이바 그 입법에 반대하는 우리의 견해를 표하고자 한다.

첫째, 테러방지법안은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고, 그 조직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며,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사찰권을 부여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넓힘으로써, 군사독재의 종식과 더불어 기능이 제한되어 왔던 국가정보원을 다시금 인권 유린의 대명사였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로 회귀시키려는 반역사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법안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응변으로 보여준다. 기존의 테러담당부서와는 달리 법률과 예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독자적인 조직인 대테러센터의 설치는 향후의 국정원 개혁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운영과 조직이 공개되지 않는 테러진압 특수부대가 군에도 설치되며, 대테러센터의 장, 즉 국가정보원장은 이 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군의 출동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출동여부를 좌우하는 셈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국가중요시설 등의 보호 명목으로 출동하는 군 병력의 활동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법안과 달리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행사는 삭제됐다지만, 과거 군에 의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우리 국민

들로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군대의 등장이 단순한 '행정응원'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반하여, 테러방지법안에서는 동원된 군병력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국방부장관이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군 지휘권의 논리만 중요하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위험이나 법체계상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책회의 의장의 견의를 거쳐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하였지만, 동원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르고, 군병력이 동원된 국가중요시설 중에는 청와대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시절처럼 30 경비단이 청와대를 경호하는 사태가 법적으로 다시 가능하게 된다.

넷째, 테러방지법안은 감청 및 통신제한조치의 사유를 확대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찰 및 출입국 규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에 의하여 뒷받침될 때, 이러한 인식이 수사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급격히 확산되는 반인권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허물어뜨리는 한편 극도로 강화된 정보기관의 권력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정신을 가르치기 위하여 강단에 서고 있는 우리 헌법학 교수들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라도 국회는 입법권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 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 폐기하고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보다 철저한 개혁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1월 19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헌법학 교수 일동

강경선(방송통신대), 강태수(경희대), 김민배(인하대), 김승환(전북대), 김욱(서남대), 김정태(대진대), 김종서(배재대), 박병섭(상지대), 서경석(광주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기춘(경남대), 송석윤(이화여대), 오동석(동국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울산대), 이현환(서원대), 임재홍(영남대), 한상희(전국대) (이상 18명, 11월 18일 오후 9시 현재)      이금숙(순천대), 정영화(서경대)

##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조 국(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2001년 국정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은 시민·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입법이 무산되었으나, 지난 11월 14일 최종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정보위를 통과한 최종 수정안에는 2001년 최초 법안에 있었던 수많은 독소조항이 상당 부분 개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1년 최초 법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가를 국회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최종수정안 역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먼저 법안은 "테러" 개념을 9개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열거된 국제협약의 범죄개념이 한국 형법상의 범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도 있다는 점,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열거된 국제협약상의 범죄는 테러방지법이 없더라도 현행 형법 및 특별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굳이 "테러"라는 별도의 범죄규정이 새로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2. 다음으로 법안은 "테러단체"는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의 경우는 그 대상이 확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의 경우는 확정이 힘들다.

특히 "연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반미 이슬람 단체와 연락을 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공조를 맺고 활동하는 국내의 반전평화단체도 이 단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될 만한 강령, 규약, 활동이 없으나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는 일체의 단체가 바로 이 규정에 따라 "테러단체"로 낙인찍힐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외에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단체"라는 새로운 규정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 경우 남북간의 새로운 분란이 예상된다.

3. 2001년 최초 법안에서 현재의 최종 법안에 이르기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는 점은 '대테러센터'의 신설이다. 먼저 최종법안은 앞에서 본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센터'에 정보수집, 출입국규제, 감청, 군대 동원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국내의 반전평화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물론, 국내에서 활동하는 수

많은 무슬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테러센터'라는 새로운 기구 없이도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종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테러방지활동 역시 이 법률이 없어도 다른 여러 법률에 의거하여 수행될 수 있다. 테러방지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 등의 기구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재난관리법상의 등 각종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며, 또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하여 국정원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간섭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미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대테러업무를 왜 '대테러센터'의 신설을 통하여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조직·예산축소의 움직임을 미리 봉쇄하고, 나아가 미래의 조직확대를 예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추단이 틀린 것이라면 이 법률의 시급한 제정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정원 측에 있다.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짜 : 2003년 11월 19일 수요일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98개 단체, 참가단체는 아래 참조)

제목 : 의원들의 테러방지법안 입법 반대 의견 표명 환영한다.

테러방지법안 법사위 통과를 막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방침을 환영한다.

매수 : 총 2 쪽

문의 : 민변 김기연 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참여연대 양영미 723-4250

### <논평>

테러방지법안 법사위 통과를 막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방침을 환영한다.

1. 국정원 강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 중 천정배·정범구·유시민·김홍신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 또한 열린우리당은 19일 아침 정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여러 문제가 있다는 데 참석한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늘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막기로 했다. 김근태 원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우리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가했던 천정배 의원이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추후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3.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19일, 오늘 낮 2시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4. 테러방지법안 반대 입장은 표명한 천정배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각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법치주의가 침해되고 권력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앞서 “테러방지법의 근본 문제는 국정원에게 ‘집행권’을 주는 데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헌법 질서 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과 국무회의, 행정 각 부처로 이어지는 집행기관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조직이다. 국정원은 헌법 기관도 아니며, 국회에 의해 감시도 많이 약한 편이다.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국정원이 다른 부처들을 ‘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 국정원의 전신 기관들도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벌이고 개입해 왔었다”고 테러방지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런 문제가 많은 법안을 미리 인식하고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5. 우리 인권·시민·사회·민중단체들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천정배, 유시민, 김홍신, 정범구 의원이 테러방지법이 사실은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반민주 악법임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소신 있게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또 열린우리당이 뒤늦게나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를 막기로 결정한 것을 주목한다. 나아가 조속한 시일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테러방지법안 입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아직까지 당론을 정하지 않은 당들도 이 문제에 대한 공론 과정을 통해 ‘테러방지법안 입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 <끝>

#### <참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19일) 참가자 :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택기 정책조정위원장, 이강래 정책조정위원장, 김태홍 정책조정위원장, 법제사법위 최용규 의원, 천정배 의원, 남궁석, 강봉균, 김성호

## 국정원 권한 강화법인 이른바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반인권 의원 선포문

우리 사회는 다시 정보 국가가 되고 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제2의 국가보안법인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려고 한다. 국가보안법에 버금가는 반인권 악법인 이른바 ‘테러방지법’은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편에 불과하며, 사실상 ‘국정원산하대테러센터설치법’이다.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국민을 일상적인 감시체제 하에 편입시키는 반인권 음모이며, 반민주적인 악법을 만들어 내는 폭거이다. 국가정보원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반인권적이고 반역적이며 반민주적인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는 의원들은 이미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오늘, 우리 인권·시민·사회·민중단체들은 지난 11월 14일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의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도록 선동한 이른바 국회 정보위원회 ‘테러방지법안심사관련4인협의회’ 소속 김덕규(열린우리당), 정형근(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홍준표(한나라당) 의원들을 ‘반인권 의원’으로 선포한다. 또한 이른바 테러방지법안 의결을 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나머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인권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대테러센터설치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반인권 의원’임을 선포하고 반드시 국민적·역사적인 심판을 할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민중단체들은 국가정보원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 나야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또한 이번 기회에 국정원과 일부 의원들의 국정원 강화 음모에 맞서 대선 당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바 있는 국정원 개혁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다.

국정원 개혁운동의 첫 번째는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제정을 저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회에 반인권적·반역적이·반민주적인 의원들이 발불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우리는 오늘 김덕규·정형근·함승희·홍준표 의원을 반인권 의원으로 선포하면서 국정원 개혁운동을 시작한다.

2003년 11월 20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및 테러방지법제정반대 집회 참가자 일동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서울 종로구 창신2동 592-7 T.763-2606 F.745-5604 E-mail.minka21@hanmail.net

**국회 정보위 김덕규·정형근·함승희·홍준표 의원에 대한  
반(反)인권 의원 선포대회**

11월 19일(수)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예정인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버금가는 반(反)인권 악법입니다. 국내 98개 인권시민사회단체(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들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강력한 제정반대운동을 전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단체 등에서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제정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14일(금) 국회 정보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심사4관련 4인 협의회> 소속 김덕규(열린우리당), 정형근(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홍준표(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반(反)인권 의원"으로 선포키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11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의결에 찬성한 의원들 역시 '반(反)인권 의원'으로 공식 선포할 계획입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인권 시민 사회단체들은 11월20일(목) 오후2시 대규모 연대집회를 통해 반민주 반인권 악법 제정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  
**2003년 11월 20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11월 19일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할 국회법사위 제2소위원회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용균 최연희 최병국 함석재(한나라당) / 함승희 조순형(민주당) / 천정배 최용규(열린우리당)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짜 : 2003년 11월 25일 화요일

수신 : 국회의원 귀하

발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100개 단체, 참가단체는 3쪽 참조)

제목 :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왜 이렇게 사활 거는가?

열린우리당은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

메수 : 총 3 쪽

문의 : 민변 김기연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왜 이렇게 사활 거는가?

#### -열린우리당은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

1. 24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고위 간부 10여명과 함께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나, "그동안 테러방지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충분히 해소한 만큼 테러방지법의 연내처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다.

현재도 국정원은 현행 국정원법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제3조 1항 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토록 사활을 걸고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고 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려는 것은 해외 정보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2. 법은 사람을 가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장은 계속 바뀌지만,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폐지되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또한 국정원장이 과거 민주인사라 해서, 정보기관의 속성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비밀주의를 그 속성으로 하며, '예방'이란 명목 하에 사람들을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해 감시 대상에 두는 기관이다. 정보기관은 민주주의와는 기본적으로 모순적이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기관이 존재하는 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진전된 사회라면, 정보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행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우리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에 어긋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진정 ‘참여’ 정부를, ‘열린’ 당을 지향한다면,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힘 빼 게 아니라 ‘국정원 개혁’에 착수하는 혁명함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3. 국정원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려는 것은 해외정보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정원이 해외정보기관과 연계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국정원이 정보 업무 총괄하면서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한데 모아 각 국 정보수사기관들에 건네고자 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발상이다. 누차 지적해왔듯이,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이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함부로 총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회는 ‘정보 교류’의 필요성에 선불리 고개 끄덕거릴 것이 아니라, 정보 교류의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회조차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기관 간의 해외 정보 교류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 교류가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와 법을 거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폐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엔안보리 결의 1373호가 이야기하는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도 ‘국제법과 국내법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한편,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과의 만남 후, “여러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테러방지법 제정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언론보도는 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에도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정원, 중앙집권화된 경찰, 강력한 검찰 권력, 이들 기구 모두가 전문화된 대테러 업무를 하고 있다. 이른바 통합방위 사태 시엔 군대, 경찰을 비롯해 모든 방위요소들이 총동원되는 통합방위법도 있다. 만약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문제가 있지만 수정을 해서라도 테러방지법은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테러 대응을 위한 기존 법제와 기구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먼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테러업무의 조정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대테러업무 조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지금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테러방지’란 명분에 눌려 법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를 낼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에 국민이 준 입법권한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뒷장 계속)

### ○ 국정원에 요구한다!

1.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 ○ 열린우리당에 요구한다!

1.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

2. 언제까지 늦출 것인가.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100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동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 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100개 단체, 03.11.25 현재) (가나다순 연명)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짜 : 2003년 12월 4일 목요일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103개 단체, 참가단체는 아래 참조)

제목 : 12월 4일 14:00(낮 2시)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중단 및 파병 철회 촉구 집회

매수 : 총 2쪽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중단 및 파병 결정 철회 촉구 집회>

날짜 : 2003년 12월 4일 목요일 낮 2시

장소 :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

순서 :

- ① 정부의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 입법 강행 규탄 발언
- ② 정부의 이라크 파병 강행 규탄 발언
- ③ 파병을 막기 위한 시민단식 모임 '소망의 나무' 이야기  
(박기범 : 단식 13일 째)
- ④ 성명서 낭독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 및 테러방지법 입법 강행 중단 촉구

1. 안녕하십니까? 인권옹호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이라크 현지 민간인 피격 사건 이후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거듭 당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듭 밝혔듯이,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는 법이 아니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태롭게 하는 법입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11월 21일 한 언론사와의 설문 응답 과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14명 중 7명이 수정 혹은 반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둘 경우 국정원의 권한 비대 가능성 △테러단체 규정의 모호함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현행 통합방위법과의 충돌 등이 국회의원들이 밝힌 수정 혹은 반대 의견의 이유였습니다. 대한변협도 11월 24일 “테러방지법안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현법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정부는 이라크 파병 방침을 고수해 테러를 부추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정보수사기관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 강행을 테러대책이라고 호도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이에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이라크인의 생명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 결정의 철회와 테러방지법 입법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12월 4일 낮 2시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개최합니다. 4일로 13일 째 파병 반대 단식 농성 중인 동화작가 박기범 씨도 이 집회에 함께 합니다.

4. 귀 언론사에서 참석하셔서 꼭 취재·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103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NCC인권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장애인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홍사단/동성애자인권연대/전국민중연대-(소속단체)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사회당,사회진보연대,영동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보건복지민중연대(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여성민우회/울산인권운동연대/위례시민연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의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2003. 11. 27 현재 103개 단체)

## <성명>

### 폭력의 악순환 몰고 올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4. 이 황당한 모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안에서는 자국민을 요새 속에 가두고 밖에서는 이라크인들의 생명과 자유를 약탈하는 미국의 길을 쫓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테러 위협을 내세워 정보기관의 권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끝>

2003년 12월 4일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103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NCC인권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장애인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홍사단/동성애자인권연대/전국민중연대-(소속단체)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사회당,사회진보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보건복지민중연대(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여성민우회/울산인권운동연대/위례시민연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의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지문날인반대연대/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2003. 11. 27 현재 103개 단체)

1. 이라크 저항 세력의 총격으로 인한 두 노동자의 죽음은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비탄과 슬픔을 안겨 주었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이 불러 온 비극임은 분명하다. 무모한 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파병을 서두르며 폭력의 수렁으로 빠져들기를 자초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정부는 국정원 권한 강화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이번 비극으로부터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정부 스스로 안전 대신 폭력의 악순환을, 자유 대신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를 택하고자 하는 것인가?

2. 지금도 이라크에서는 점령자 미국이 벌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땅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점령군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라크인들의 생명과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기로 몰아 넣는 일이다. 이는 파병 부대의 성격을 어떻게 한들, '치안유지'니 '재건'이니 어떠한 명분을 들이댄들 변함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 죽음까지 경험한 이 마당에 정부가 아직도 파병의 이유로 '국익'과 '실리'를 내세운다면, 더 이상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민주정부라 할 수 없다.

3. 한편, 지난 2일 정부는 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거듭 말하건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는 법이 아니라, 테러 위협을 내세워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민주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비밀주의를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행정각부의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군대의 동원까지 요청할 수 있는 위헌적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 모호한 '테러', '테러단체'란 개념에 근거해, 내·외국인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원인을 차단하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라크에서의 두 노동자의 죽음이 정부에 의해 정보기관 권한 강화의 계기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가 테러 위협을 몰고 올 파병을 강행하면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옥죄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짜 : 2003년 12월 9일 화요일

수신 : 국회의원 귀하

발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103개 단체, 참가단체는 11쪽 참조)

제목 : <의견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매수 : 총 11쪽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 민변 김기연 02-522-7284

### <의견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한국인 노동자 피격사건 이후 제시된 정부 테러대책에 대한 비판

테러방지법의 연내 제정이 아니라 즉각적인 법안철회를 요구한다

1. 이라크 현지 노동자 피격사건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응: 무엇이 문제인가?
2.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내세워 정보수사기관의 권력을 강화하는 법에 불과하다.
3. 상황노리에 끌려가는 법률안 심의는 위험하다.

우리는 앞으로 열리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의제2소위와 전체회의만큼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시민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각각 제기한 쟁점을 충분히 토의·검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테러방지법안의 입법 통과가 갖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 1. 이라크 현지 노동자 피격사건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응: 무엇이 문제인가?

##### 가. 연내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을 결의한 12월 2일의 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 대해.

11월 30일 이라크 현지에서 한국인 노동자 2명이 이라크 저항세력의 총격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사회 내에서는 애초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예고했던 비극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한 가운데, 12월 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하 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테러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정원과 총리실이 협조하여 정부합동으로 각 기관의 테러대비 태세와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 실태를 종합 점검하도록 지시했으며 다음과

같은 분야별 대책도 발표했다. ① 재외국민, 공관원, 기업체 근로자, 파병부대 등 안전관리 강화 ② 출입국 및 화물검색 강화 ③ 주요시설 경계 및 안전활동 강화 ④ 화생방물질 관리강화 ⑤ 공·항만 안전대책 나아가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연내 입법 처리를 국회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발표된 것이다.

2001년 겨울과 2002년 봄, 그리고 2003년 9월이래 국가인권위원회와 100여 개 인권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내 부처들마저 한 목소리로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을 연내에 제정하는 것이 테러대책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를 접하고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답답함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그 어떤 자기비판이나 성찰도 없이 ‘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의 연내통과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대테러대책위원회가 무엇이기에 공개적으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법무부의 목소리 같은 것은 완전히 파묻혀 버렸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법무부장관은 11월 19일 열렸던 ‘열린우리당’과의 당정 정책정례회의에서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은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테러문제는 법무부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중앙일보, 03. 11. 24일자)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원은 최초 발의 때 법무부 의견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후 수정, 재수정을 거치면서 한번도 법무부에게 공식의견을 묻지 않았다. 법무부측의 67가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핵심사안은 손대지 않은 채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발언했다(인터넷 문화일보, 03. 11. 23일자). 이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정원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지난 12월 2일의 대테러대책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연내제정이라는 의견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연 법무부가 제기한 67개의 쟁점에 대해 차근차근 토론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앞으로 열리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의제2소위와 전체회의만큼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시민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각각 제기한 쟁점을 충분히 토의·검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테러방지법안의 입법 통과가 갖는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나. 우리나라에는 중동/아랍권에 대한 정보와 정책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처할 방안도 없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번의 ‘노동자 피격사건’을 보며 하나같이 애통해하고 있다. 그리고 유족들은 사건이 일어나고도 한참 뒤까지 정부로부터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통곡하였다. 이런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중동외교에 관한 한 우리 정부는 무능력자에 가깝다. 중동문제 전문가가 외교통상부 내에 사실상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아중동국의 올해 예산은 모두 9억500만원으로 외교통상부 전체 사업비 5348억 9572만원의 0.17%에 불과하다. 유엔에 가입한 189개국(남북한 제외) 가운데 66개

국을 관장하고, 우리 해외건설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지역을 다루는 부서로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가 아닐 수 없다(한겨레신문, 2003. 11. 25일자 참고). 중동특수를 안겨다 준 이들 지역을 대한민국 정부는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sup>1)</sup> 그러나 국방부에서 조사팀이 갔다 오고, 국회조사팀이 갔다와도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다. 모든 정보는 미국 혹은 서방측에서 오기 때문이다.

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급조된 강력한 테러대책이 아니라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정보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제대로 된 정부당국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정보의 부재, 정보원(情報源)의 편중"을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무수한 대책회의와 국민 앞에 보이기 식의 '강력한' 대책보다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정보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러자면 보안당국, 정보당국의 일방적 보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타 부처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사안이 급하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대책을 만들어내는 식의 대처는 지양해야 한다.

#### 라. 파병철회야 말로 높아지고 있는 테러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다.

아직도 이라크에서는 미국이 이라크의 비정규 계릴라군에 대해 정규전에 버금가는 폭격을 가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는 통상의 의미의 테러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것은 미국의 점령에 대한 비정규 계릴라군의 저항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옳으며, 기본적으로 전투행위의 한 양상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전투행위라도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은 비인도적이며, 전쟁법에 반한다는 사실은 비판되어야 한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라크 국민들의 79%가 후세인을 몰아낸 연합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조사국민 중 80%가 "정치의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라크 국민들은 병력(兵力)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파병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라크에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그러한 전투행위, 경우에 따라서는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하기도 하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이라크 내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12·2 대책 중에는 그와 관련하여 어느 것 하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테러의 근원(根因)에 대해 고민하고, 파병문제를 재검토하려는 진지한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내놓는 테러 대책은 모두 공허한 것에 불과함을 인정해야 한다.

1)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 걱정과 비판을 해왔으며, 국회 또한 예산심의 때마다 외교통상부의 편중된 예산편성을 대해 질책해왔다.

정부는 이라크 노동자 피격사건이 한국 파병문제와 무관할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판단만을 연일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면이 결국은 이라크 파병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바탕 위에서 파병철회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해나가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그러한 논의를 슬기롭게 풀어 가는데 국회도 지혜를 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막연한 불안감만을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로서는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다.

#### <테러의 근원>

테러는 크게 국내테러(지역적 테러)와 국제테러(혹은 전지구적 테러)로 나뉘어 진다.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이 그 독립을 위해 스페인 내에서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전자라면 '알 카에다'에 의한 9·11 테러는 후자에 예에 속한다. 그런데 후자의 테러는 1970년대 이래 원래 이스라엘 내에서만 행해지다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一極지배체제가 공고해지고 미국의 대중동정책이 더욱 보수화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전지구적으로 확대되었다. 알 카에다 등은 단일조직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 조직을 형성하고 있고, IT 기술과 언론매체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러한 측면들, 특히 IT 기술을 이용하고, 유목민(nomad)적 조직체계를 적절히 이용하는 점들에 주목하여 미국의 랜드연구소 등은 '뉴테러리즘'의 등장을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른바 '알 카에다 현상'을 '뉴테러리즘'으로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지만, 다만 이들이 중동만이 아니라 전지구적(global)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IT 기술을 적절히 이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알 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한 핵심은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알 카에다 같은 조직들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세력을 몰아낸다고 하는 목표를 1970년대 이래의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력이 전세계적으로 관철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테러가 유일한 저항방법이라고 본다.

한국은 스페인처럼 국내에 지역적 테러조직이 존재하는 국가도 아니거니와, 이슬람테러세력이 주된 목표로 삼는 나라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의 파병결정으로 한국과 일본이 급격히 테러의 주된 타겟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테러리즘의 근원(根因)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의 파병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말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 2.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내세워 정보수사기관의 권력을 강화하는 법에 불과하다.

### 가.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대테러센터 설립을 보장받으려는 의도.

인권침해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원래의 초안(2001년 11월에 최초 정부 발의로 제안됨)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테러방지법안으로 만들어졌고, 이 안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국회와 정부가 시민인권단체들의 인권우려에 대해 반응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안 역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시민인권단체들이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다시 한번 귀기울이기를 당부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정원에 설치하는 대테러센터 문제이다.

법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테러방지법은 처음부터 사실상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립하려는 의도에서 제안된 법이다. 2001년 11월이래 법안은 몇 차례 수정되었지만 현재의 의원입법안에서도 대테러센터 부분은 이전 법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어떤 경우에도 대테러센터의 설치·조직화를 고집함으로써 애초 국정원이 목표로 했던 대테러조직의 설치에 대한 ‘법률적 승인’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도 국정원은 현행 국정원법에 의거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제3조 1항 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정원 ‘개편’이 얘기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법제 하에서라면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국정원 내의 기구축소 및 조정은 가능하다. 반면 대테러센터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다면 국정원은 개편논의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독립적인 조직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국정원 조직 개편(혹은 개혁)에 대한 요구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테러센터와 같은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정보기관 개편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일종의 사전포석인 셈이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대에 대해 국정원측이 몇몇 조항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테러센터 부분만은 결코 손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나. 미국에도 대테러센터와 같은 조직이 있다?

주지하듯이 9·11 테러이후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그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였다. 9·11 테러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보기관들이 오히려 조직과 예산확대에 성공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그들이 그러한 조직확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9·11 이후의 비이성적 분위기, 누구도 행정부의 강력한 대테러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지

못했던 분위기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정부도 이번 ‘이라크 내 노동자 피격사건’을 그런 식의 분위기 조성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점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미국에서도 우리의 대테러센터와 같은 조직이 CIA 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하루빨리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실제로 CIA와 FBI 내에는 테러업무를 총괄하는 센터들인 TTIC(Terrorist Threat Integration Center)와 TSC(Terrorist Screening Center)가 9·11 이후 각각 만들어졌다. 그런데 과연 이들 기구들이 정보의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하여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사전에 발견·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러한 기구들을 덤으로 하나 더 만들었으니 정보기관들은 “우리도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테러방지효과는 미지수라는 얘기이다.

미국의 이들 조직들이 한국 테러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테러센터의 모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미국의 TTIC나 TSC와 한국의 대테러센터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조직이 군대의 동원을 요청하고, 행정 각부 내에서 고유하게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기획·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미국에는 각각의 연방부서들이 만든 테러리스트 명단이 12개 이상 존재한다. 연방국가의 특성상 정보는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보획득의 흐름을 원활히 하며, 방대한 연방정보기관인 CIA나 FBI의 대테러업무수행의 효율을 위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Presidential directive)에 의거해서 만든 것이 이들 기구이다. 이들 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기 정보결정권을 옹호하는 정보감시단체들을 위시하여 미국 내 시민인권운동단체들의 비판이 현재 거센 실정임을 아울러 덧붙여둔다.

### 다. 현재의 법적, 사실적 조건하에서 국정원을 해외정보교류의 총괄부서로 만들고자 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정보의 집중과 정보권력의 독점이 심화될 것이다.

한편 국정원측은 다른 나라들과의 정보교류를 총괄하기 위해서도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국정원이 국내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총괄하지 않으면 해외와의 정보교류협력이 어렵다. 해외와의 정보교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하는 것이지 보안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정보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논지를 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거에는 거의 비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었던 비밀첩보수집(도·감청 장비에 의한 도청·감청, 비밀정보원의 활용) 활동도 지금은 모든 수사기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장비의 대중화는 경찰·검찰을 또 다른 비밀정보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찰·검찰 내의 정보수집업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만이 정보업무의 적임자라는 논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묻고 싶다.

## 해외정보교류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정보교류를 위한 정보총괄'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관련 논점을 하나 더 지적해보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사실상 총괄하여 해외정보교류를 해오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관련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나아가 국정원을 위시하여 정보교류를 행하는 기관들이 해외정보 교류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있는지 국민들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미흡하나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제1항)고 규정한 뒤,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 제2항)고 하여 정보제공에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예외 중에 하나가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제10조 제2항 제3호)이다.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조약정보에 의하면 현재 미국과는 "일반보안 협정"(1962년 체결. 내용 미공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1987. 9. 24일 서명, 발효. 내용 공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각서교환"(1987. 9. 24일 서명, 발효. 내용 미공개) 등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밀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은 체결되어 있는 듯하나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체결된 이들 협약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나아가 OECD 이사회가 제정한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이 요청되는 개인정보는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된다(동법 제3조 제2항 참조)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법 제3조 제2항을 국정원이 수집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 모두를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이해하는데 반대한다.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국정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장치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국정원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보다 구체화하는 법개정도 필요함을 아울러 덧붙여 둔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정보교류협정을 대체로 체결하는 나라이고(유럽내에서는 독일과 덴마크가 미국과 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도 분류됨), 최근에는 유럽연합과의 정보교류협정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교류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국에서는 정보보호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정보들이 협정 체결국 사이에서 오고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9·11 이후 미국 측이 노력하고 있는 정보교류강화에 대해서는 말이 정보교류이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의 정보가 미국 쪽으로 일방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각도 만만찮다.

9·11 테러와 그 결과는 대외적 안전과 대내적 안전 상의 이해관계가 상호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9·11만이 그 원인은 아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대내적 안전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대내적 안전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화, 국제화의 과정에서 각국이 서로 엮여들어 갈수록 위기와 분쟁의 영향이 한 국가에 국한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반면 자국의 안전정책이 다른 나라 및 지역의 결정과 사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커진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안보기구(정보기관, 경찰, 검찰, 군대 등)들은 국제협력의 틀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국제협력의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력의 효율성 및 효과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개별국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안보기구 통제시스템(의회, 법원 및 여론에 의한 통제)이 현재의 국제협력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국제협력(정보협력 등) 자체가 민주주의적 기준에서 벗어난 형태로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단지 안전영역만이 아니고, 모든 정치영역과 관련된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면 정보의 집중과 정보권력의 독점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 해외정보 교류와 관련한 민주적 원칙을 마련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정원의 정보독점현상을 심화시킬 것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정보교류현황부터 파악하고(협약, 조약의 내용에 대한 점검을 포함), 해외정보교류와 관련한 원칙을 마련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반첩보는 원칙적으로 교류·교환 가능하게 하되, 개인관련정보는 예외적·제한적으로 교류·교환하게 해야 하며, 특히 이들 후자의 정보가 교환되었을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등 외부의 독립적 기구가 정보기관의 해외정보교류에 대해 사후 검증하는 절차도 도입해야 한다.

## 3. 상황논리에 끌려가는 법률안 심의는 위험하다.

지금 테러방지법안은 국회 정보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라크에서의 우리 노동자 피격사건으로 법사위 위원들의 심적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이라크에서 한국인이 사망하고,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위협이 높아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위헌 운운, 인권 타령, 법체계 타령을 할 것인가? 테러가 나면 당신이 책임질 것인가?라는 식의 비판을 받지 않

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그 정도의 '상황논리'에 위축되어 정당한 입법권한의 행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끌어내는 장이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처음부터 답을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여야 한다.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선정적인 여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입법심의가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에는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식의 '상황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적어도 현재와 같은 안보논리가 힘을 얻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도 '공개와 토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이들은 예의 그 상황논리에 내몰리고 있다. 오죽했으면 독일의 한 법원은(헤센 주 고등법원) 다음과 같이 말했겠는가?

법원에 결정권과 책임을 넘겨줄 때는, 법관들은 - 위기의 시기라고 하더라도 - 자신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판결해야 한다는 기대감도 당연히 있었던 것이다. (OLG Frankfurt, NVwZ 2002, 626쪽).

상황논리가 아니라 헌법의 논리에 충실히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헌법은 "기본권과 국가의 필요성이 충돌할 때는 기본권을 우선하라,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고 명한다. 테러방지법은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테러개념, 테러단체개념에 근거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을 테러에 대해 무한정 허용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기준을 이미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의 논리는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헌법기관 및 국가기관 중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관은 반드시 의회의 법률로서 정하되, 그 법률은 헌법이 정한 정부조직원리, 권한분장(權限分掌) 원리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정부조직원리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 군과 경찰의 분리, 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분리이다. 테러방지법은 바로 그러한 헌법적 원리를 근간에서부터 흔들어놓고 있다.

정보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대테러센터가 집행기관인 행정각부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고, 그들 기관의 업무가 대테러업무일 경우 이를 "기획·조정"할 수도 있다. 군을 포함한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도 있다. 나아가 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병력 또는 항토예비군(이하 "군 병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모호한 구성요건 아래 군이 대내적으로 민간영역에 출동하는 경우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외국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군대의 대내출동에 관련한 문제로서 헌법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독일의 예를 들면 현재의 집권당인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우세한 상황임을 부연해 둔다. 어쨌거나 정보기관(우리 법은 국정원을 '정보수사기관'이라고 표현)이 행정각부의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하고 군대의 동원을 요청하는 예는 세계적으로 볼 때도 유례가 없다.

### <정보기관의 속성>

9·11 테러를 직접 경험했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아 정보기관을 운용하는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정보기관의 예산이 급격히 늘거나 조직이 갑자기 팽창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맞서 시민사회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저항은 정보기관이 갖는 속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우선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비밀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나 정권의 한 도구이면서, 항구적인 자신만의 관료적 이해관계를 갖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는 조직이기도 하다. 이를 기구는 안보위협만이 아니고 정치적 개혁운동이나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자(야당 등)의 활동에도 초점을 맞추어 일 해온 조직이다. 한국처럼 정치사찰이 심했던(혹은 심한) 나라에서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활동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그러한 사찰활동들은 대개 불법이므로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투명성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활동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외부 통제수단인 의회, 법원, 여론에 의한 통제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 독일 등 의회 내에 정보기관장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나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비밀정보기관의 활동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국민이 있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한다.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대개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활동'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만다. 비밀정보기관 내부의 조직체계도 문제이다. 모든 게 비밀리에 진행되니 조직 내부에서도 권위적인 지시문화가 지배하고, 이른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 행정 같은 것은 생각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각국의 비밀정보기관 전문가들은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경직되어 있고 관료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비밀주의, 경직성과 관료성은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사회와 시대의 변화, 흐름으로부터 낙오시키고 있다.

이상 지적한 헌법의 논리에 입각해 볼 때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위헌적인 법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는 위헌적인 법률을, 그것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누더기가 되어 버리는

법률을 고쳐서 결국 기이(奇異)한 악법 하나를 만들어내는 우(愚)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한 의원은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그것이 국민의 인권, 한국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지적이 사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정확한 지적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이 합헌적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위시하여 많은 시민인권단체들이 테러방지법 입법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기존의 법 체계가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기에 테러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국정원은 변화된 정보기관 환경과 뉴테러리즘의 특징의 예를 통해 우리들이 위에서 제기한 비판과 의문에 답하는 것을 포함하여 “왜 정말 테러방지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진지한 질문들을 국회의 입법심의과정에서 분명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2월 9일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103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NCC인권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장애인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홍사단/동성애자인권연대/전국민중연대-(소속단체)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사회당,사회진보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왕장,보건복지민중연대(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여성민우회/울산인권운동연대/위례시민연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의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지문날인반대연대/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2003. 11. 27 현재 103개 단체)

민가협 목요집회 500회 특별결의문

#### 테러방지법 제정, 절대 반대한다!

지난 11월 30일 이라크 현지에서 한국인 노동자 피격사건 이후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안이 테러 위협을 빌미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임을 수차례 강조하며 이 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대(對)테러활동을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정부 각 부처의 테러대책에 대한 기획,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그리고 대테러센터의 장이 되는 국정원장은 외국인의 출입국 규제 요청권,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을 가지며 군 병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비밀정보수사기구인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행정 각 부처를 지휘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이 자행했던 인권유린, 정치공작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현실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름을 바꾸고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국정원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 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규명은커녕 진실을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또한 변화된 국정원은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는 이미 테러예방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통합방위법, 국정원법, 일반형법 등에서 테러 예방활동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재난방재센터, 검찰, 경찰 등 행정 각 부처에서 정규업무로서 관장하고 있다. 기존의 법안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테러예방 활동을 벌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과 같은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발상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역행하고 있으며, 북한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에서 확인되듯 우리 민족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부정하는 위험스러운 법안이다. 또한 우리사회가 지난한 민주화투쟁을 통해 어렵게 확립한 민주적 절차와 인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다.

10년 세월을 한결같이 인권회복, 인권실현을 외쳐온 우리들은 목요집회 500회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한번 만들어진 악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반인권적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는 전향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2월 11일 민가협 목요집회 500회 참가자 일동

날짜 : 2003년 12월 11일 목요일

수신 : 국회의원 귀하

발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103개 단체, 참가단체는 4쪽 참조)

제목 : <의견서>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심사안에 대한 의견

매수 : 총 4 쪽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 참여연대 양영미 02-723-4250

###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심사안에 대한 의견

1.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등 비례원칙에 맞아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행위의 합헌성,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례원칙의 첫 번째 내용이 적합성의 원칙이다. 수단은 목표를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 적합성의 원칙이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몇 번이고 강조한 바 있다. 만약 이 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정부, 즉 국가정보원이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몇몇 첨보에 의거 한국에서의 테러 가능성만 외부로 유포시켜 왔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은 첨보수준의 정보와 그에 근거한 ‘안보위협론’, ‘유비무환론’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할 입법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2. 국회는 하나를 내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국정원에게 대테러활동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앞으로의 국정원 개혁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 타 정부기관과 달리 우리 시민인권단체들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

는 이유 중에는 국정원에게 대테러활동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앞으로의 국정원 개혁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다. 국회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으로 대표되는 비밀정보기관(군 기무사 등도 포함)은 1950년대의 방첩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시절의 중앙정보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국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기관종합평가(객관적 평가)를 받은 바가 없다.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비밀정보기관 평가단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그 작업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하여 비로소 상, 하 양원 내에 정보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한 번도 이루어 진 적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이 17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결과 막강한 비밀정보기구를 국정원 내에 다시 하나 더 만들어지는 상황을 용인하고 난 뒤에, 곧바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평가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 3.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테러업무의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순진하거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테러업무를 총괄케 하는 것이 테러방지에 있어 결코 최선의 방안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그러한 발상은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는 그러한 발상이 냉전체제 이후의 변화한 정보기관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無知의 소치이기도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테러리스트들이 IT 지식 등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정보화시대, 인터넷 시대의 장점을 적극 이용한다. 따라서 이들에 맞대응하자면 과거와 같은 형태의 비밀주의적인 정보 수집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각국 정보기관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이른바 현대의 정보전쟁에서는 비밀로 되어 있는 정보를 발견·수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정보들 중에서 유의미한 정보와 믿을만한 정보를 가려내고 그것들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밀첩보활동, 내사활동에만 종사해온 정보기관원들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예전처럼 방첩정보, 謀叛陰謀(conspiracy), 역정보를 아는 것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 사안의 배경, 콘텍스트(Context)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사안의 배경 같은 것들은 어느 한곳에 비밀리에 침투하여 가져올 수 있는 성질의 정보들이 아니다. 사안을 이해하고 콘텍스트를 해석하는 작업은 공개적인 기관들이 외부의 협조를 구하면서 더욱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비밀정보수집을 하고 행정기관들의 대테러활동까지 기획·조정하겠다는 것이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이고, 핵심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저 거대한 비밀정보기관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테러정보'를 대테러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포착할 수 있고,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국정원 주도로 테러업무를 기획·조정하면 효율적인 테러방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냉전이후의 변화된 정보기관 환경을 모르고 하는 순진한 얘기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 4. 법안의 몇몇 부분은 더욱 개악되었다.

법안 제11조는 이전의 비판을 수용하여, 대테러센터장의 특수부대 요청권을 수정하였다.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이 얼마나 졸속인가 하는 부분은 여기서도 특별히 드러나고 있다.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개악된 결과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제11조(특공대의 출동)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특공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다.)

만약 이 규정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이제 군은 아무런 사전절차 없이,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테러 발생이 예상된다"는 판단을 독자적으로 내리고 특공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 전형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몇 번의 손질 끝에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끝>

2003년 12월 11일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103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NCC인권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장애인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홍사단/동성애자인권연대/전국민중연대-(소속단체)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사회당,사회진보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보건복지민중연대(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

정신계승국민연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여성민우회/울산인권운동연대/위례시민연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의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지문난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한국), (중국)/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2003. 11. 27 현재 103개 단체)